



글로벌 뉴스픽

GLOBAL NEWS PICK

차별금지법

1. 대만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 부결

동성결혼, 전체 유권자 25% 동의 얻지 못해
그러나 사법원 명령 따라 법제화 이뤄질 듯

2018년 11월 24일 치러진 대만 내 국민투표 결과 동성결혼 허용이 부결됐다. 민법상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대다수의 대만 국민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권자의 25%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5월 24일, 대만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에서 남녀 간의 혼인만을 규정한 현행 민법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2년 안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만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혼을 허용한 나라가 된다. 이러한 사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만 보수 단체들이 반발을 한 결과 국민투표 총 10개 안건 중 무려 5개가 동성애에 대한 안건이 되었다.

대만의 국민투표 사건은 국민의 외침과 정당한 투표도 사법부의 공권력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대만 정부는 앞으로 민법을 개정하지는 못하겠지만 특별법을 세워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투표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2. 미국 텍사스주 차별금지조례 논란

LGBTQ 고용 강요에 맞선
美 텍사스 목사협회, “현대의 문화적 유행보다 종교적, 도덕적 지침 우선”

휴스턴에 본부를 둔 미국 목사협회가 텍사스주 오스틴시 차별금지조례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오스틴시를 상대로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오스틴시의 조례는 ‘고용주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출신 국가,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고용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목사협회는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를 직원이나 성직자로 고용하기를 거부하는 오스틴시 내 25개 회원 교회에 대해 종교적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조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목사협회는 나아가 “회원 교회들은 현대의 문화적 유행보다는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 내 어떤 일에도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단호하여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스티브 애들러(Steve Adler) 오스틴 시장은 “차별금지조례의 고용 보호 규정이 강력하게 옹호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는 오스틴시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례는 2014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의회가 제정한 ‘휴스턴시 평등권 조례’, 일명 ‘화장실 조례’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논의를 상기시킨다. 당시 해당 조례는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을 포함한 15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는데, 여기

서 ‘성정체성’을 ‘개인의 신체 또는 출생시에 부여된 젠더(성)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의했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화장실 및 탈의실에 들어가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고, 이 같은 조례의 부당함을 지적한 폐지 운동 등이 일어난 끝에 2015년 11월 3일, 주민투표에서 61%의 찬성을 얻고 이 조례는 폐지됐다.

한편 한국의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들이 직접 조례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권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텍사스주 조례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큰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도, 주민은 단순히 조례 폐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다.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

성평등 정책

3. 캐나다 동성애 클럽 자녀 가입 여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해 논란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에 알리지 못해 LGBT 클럽에 도전하는 26개의 종교 학교들

캐나다 앨버타의 26개 중립학교가 “게이스트레이트 연합(GSA)” 클럽을 허용하지 않는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다. 캐나다의 ‘동성애자 연합 지원법’ 제24조항은, 독립적인 중립학교들이 학생의 요구에 따라 GSA의 창설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GSA에 가입한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학교가 그 학생들의 부모에게 학생의 가입여부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JCCF(Justice Centre for Confirm Freedoms)에 의해 대표되는 기독교, 유대인, 시크교도의 26개 학교가 헌법을 근거하

여 그 명령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앨버타 법원(the Alberta Court of the Queen’s Bench in Medicine Hat)의 조안나 쿠빅 판사가 이 조치를 저지하려는 중립 학교들의 시도를 판결로써 거부한 바 있다. 이에 JCCF는 이 소송을 캘거리 소재 앨버타 항소법원(the Alberta Court of Appeal in Calgary)으로 가져갔다. JCCF의 제이 카메론(Jay Cameron)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 법은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GSA는 이데올로기적 성클럽에 해당하며 급진적, 그래픽적 자료를 자주 전파한다”면서 “GSA가 공유하는 자료에 대하여 학교의 통제가 부족하고, 정부는 통제력을 잃었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앨버타 GSA 네트워크 웹사이트는 본디지, 자위권, 포르노, 성관계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명시적 자료가 링크돼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방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LifeSite News의 12월 4일 기사에 따르면 몇몇 부모들은 GSA가 이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는 잘못된 성으로 태어났다”고 믿게끔 장려했고, 이것은 결국 그들의 자녀들이 자살까지 시도하게 만드는 심리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증언했다.

자녀에 대하여 1차적 교육권을 향유하고 있는 부모들의 뜻보다는, 학교와 정부의 교육권을 앞세운 사안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4. 화장실 안에서 남녀는 같다?

성정체성 여성인 소년의 여샤워실 출입 막을 수 없어... 얼마든지 성을 바꿀 수 있다는 페어팩스의 학교 교육

미국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한 학교가 학부모 워크숍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워크숍은 “Jack’s Brain, Jill’s Brain: Gender Differences and Why They Matter.” (책의 뇌와 질의 뇌 : 젠더의 차이와 왜 그것이 중요한가)라는 주제 하에 아동 심리학자들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학교의 위원회가,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성별(sex)은 무의미하다**’라고 가르칠 것을 투표로 결정한 곳이라는 데 있다. 아이들은 이제 “성별은 태어날 때 배정되고, 바꿀 수 있다”라고 배운다. 페어팩스의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그들을 막고자 노력했다. 1,000건 이상의 논평이 쏟아졌고 83%는 그와 같은 교육을 반대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위원회는 그런 반대 목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성 관념을 강요하는 데에만 힘썼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학교의 이번 워크숍도 주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을 거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심리적인 아동 학대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사춘기 내내 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12세 소녀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가슴을 증오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표시’라고 배운 이후 부모에게 자신의 가슴이 싫다고 말하게 된 사례가 있으며, 인기 있는 스포츠 수업의 코치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밝힌 이후 일 년 만에 그룹 안의 모든 소녀들이 자신도 트랜스젠더라고 발표한 사례가 있다.

페어팩스의 학부모들은 이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까지 LGBTQ 옹호단체인 GLSEN NoVa의 부의장인 데이비드 아폰

트의 말을 인용해 학교를 ‘연구소’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는 아이들에게, 성을 인위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겪어야 할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성장 방해와 기억 손상, 그리고 신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후회한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넘어가 버린다.

만일 당신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싶은 남학생이라면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자라고 말해라. 거기서는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학생들을 반대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생명윤리

5. 중국에서 암컷 쥐 2마리로 출산 성공

포유류 단성생식(동성 파트너끼리 출산) 성공
인간에게 당장 적용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10월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연구팀이 같은 성의 생쥐 2마리를 활용하여 출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통 포유류는 암컷과 수컷의 짝짓기를 통해 번식(유성생식)을 하지만, 이번 중국의 연구팀은 일부 양서류, 파충류, 곤충 및 새 등에게 존재하는 단성생식 - 암수의 수정 없이 생식을 하는 - 이 포유류에게도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사이언스데일리의 10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 마리 암컷에게서 난자를, 다른 한 마리의 암컷에게서는 유전자가 담긴 반수체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한 다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배아를 만들었고, **210개 배아에서 29마리의 새끼 쥐가 태어났다.** 일부는 번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기술을 수컷에 적용하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앞의 과정은 비슷하고, 정자와 반수체 배아줄기세포를 통해 만든 배아를 추출하여 핵을 제거한 난자에 이식 후 다른 암컷의 자궁에 착상시켜 진행한다. 수컷만의 세포로도 역시 출산에 성공했지만, 새끼 12마리 모두 오래 살지 못했다. 현재 중국 연구진은 이러한 동성생식 실험을 원숭이에게도 시도하려는 중이고, “이 기술을 당장 인간에게 적용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을 할 수는 없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젠가는 동성 파트너 사이에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두 암컷 쥐의 출산이 있는 지 한 달 반이 지난 11월 26일,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제2회 국제인류유전자편집 회의에서 밝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 성공사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밝혔지만, 발표 이후로 그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서 그의 연구에 대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북한인권

6. 북한 내 권력층 성폭력 만연... 휴먼라이츠워치 실태보고서 발간

“너무 빈번해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도 없다”
“당국, 조사도 기소도 하지 않아 신고자 없어”

지난 2018년 11월 1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54명의 탈북민과 북한 관리로 일했던 8명의 탈북민을 인터뷰하여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오: 북한의 성폭력 실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HRW는 북한 내 직권을 이용한 성폭력이 만연하며,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을 정도라고 북한 내 성폭력 실상을 낱낱이 밝혔다.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탈북을 시도하다 구금 시설에 수감되거나,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성폭력 가해자는 당의 고위 간부,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과 보위성 요원, 검사, 군인 등의 공권력을 가진 남성들이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관리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인 낙인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HRW가 인터뷰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이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에 이를 북한 주민들은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로 HRW는 북한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이 성폭력을 범죄로 간주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HRW의 보고서를 통한 북한 주민의 잃어버린 인권에 대한 지적은 현재 한 국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 정책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권의 회복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

종교의 자유

7. 호주 기독교인 신념 지킨 웨딩 잡지 폐간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 기사 신지 않았더니
“이성 커플만 소개하는 매거진”이라며 공격

호주의 한 웨딩 잡지가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에 대한 기사를 신지 않은 후 결국 폐간됐다.

화이트매거진(White Magazine)의 창간자인 루크(Luke)와 칼라 버렐(Carla Burrell) 부부는 12년간 발행해온 웨딩 잡지를 폐간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지난 11월 17일 페이스북에 고별인사(Farewell)라는 제목의 글로 세상에 알렸다. 이 고별인사엔 2017년 국민투표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이후로 친동성혼 진영이 화이트매거진을 타깃으로 삼고 반대캠페인을 벌인 사실과, 매거진에 실렸던 부부들에게 그들의 신념과는 무관하게 인신공격이 가해졌던 사실을 밝히며 결국 두려움에 떠는 광고주들의 잇따른 광고계재 거부로 인해 폐간을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지에 따르면 지난 8월엔 화이트매거진의 전 **사진작가였던 동성애자 라라 호츠**가 매거진의 다양성 수용 부족을 꼬집으며 성소수자의 돈과 콘텐츠와 사진을 이용해 이성 커플만 소개하는 매거진이라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었다. 또한 그는 동성결혼을 다루도록 중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잡지의 방향성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버렐 부부는 고별인사에서 “화이트매거진은 항상 비종교적인 출판물이었지만 창간인인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 우리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선한 영향보단 피해만 입히는

그 어떤 사회·정치·법적인 논쟁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들의 신념은 오직 사랑을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버렐부부는 그들의 고별인사 마지막에 “사람들은 모두 다른 모습과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호소는 친동성애 진영의 캠페인이 ‘다양성을 수용하라’는 그들의 주장에 모순되는 행동을 한 것이며, 반동성애 신념을 가진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8. 종교 서적 집필로 인해 해고된 전직 소방관 보상받다.

종교 서적 집필, 부당한 해고로 이어져
3년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보상 받았다

30년 간 헌신적인 소방관으로 일해 온 미국 애틀랜타의 켈빈 코크란 (Kelvin Cochran) 전 소방서장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종교 서적을 집필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3년간의 지난한 법적 투쟁 끝에 보상을 받게 됐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는 “코크란의 해임을 초래한 시의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에게 120만 달러를 지불했다.

코크란의 해고는 종교적 신념을 담은 종교 서적 집필에 따른 부당한 대우였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로서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책에는 결혼 생활과 성에 대한 견해를 성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한 부분이 있다.

코크란은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온 헌신적인 공무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소방청장까지 역임, 애틀랜타시는 그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로 최고 수준의 화재 대비 체제를 갖추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이 ‘종교 서적 집필’이라는 행위로 인해 무용한 경력으로 전락했다. 애틀랜타 시는 그의 책을 승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수성 훈련’을 위한다는 명목의 30일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고, 그대로 그의 경력은 끝이 났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는 그로 하여금 법적 싸움에 돌입하게 만들었고 3년간의 투쟁 끝에 그는 보상 결정을 받아냈다. 코크란을 대리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동맹(ADF)’은 “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종교적 발언을 포함한) 공무원의 자유로운 발언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그들의 자유와 생계 모두를 잃게 하는 해고를 할 수도 없다.”면서 “코크란에 대한 이번 배상 판결이 공무원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짓밟은 정부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사례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수정헌법 제1조상 표현의 자유를 특별히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 대항할 방패로써 작용할 법 원칙이 있지만, 인권법의 시대적 유행에 따라 혐오표현 규제가 한국에서 점점 힘을 얻게 될 경우, 한국에서 코크란 사례가 생길다면 어떤 법원칙으로 그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9.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사건’ 징계는 무효?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퍼포먼스 민변 “징계사유 아냐, 헌법상 권리 침해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4일, **무지개색 옷과 깃발을 두르고 학교**

채플에 참여하였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들을 대리해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장신대에 재학 중인 학생 8명이 지난해 5월 17일, 채플 시간에 성소수자를 뜻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이들은 채플 종료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촬영해 SNS 계정에 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위와 같은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장신대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1명은 6개월의 유기정학, 3명은 근신, 4명은 엄중 경고를 내렸다. 또한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받고 동성애 관련 교육 및 동성애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민변은 “해당 학생들의 ‘무지개 퍼포먼스’는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학교 측이 학생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과도하게 징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세워진 종립학교들이 그 신념을 따라 행할 자유에 과연 힘이 실리게 될지, 아니면 사법부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한국 내 모든 종립학교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